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수급자 PCR) 청구방법 및 수급자 격리비용&신속항원검사 변경사항 안내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 요양심사부

목 차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확대
2. 한시적 방역지원금(신속항원검사) 인정 횟수 확대
3.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PCR 검사 시) 청구 방법 안내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확대

h·well
국민건강보험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확대



■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확대

- (기존) (급여제공월 2021년 12월~2022년 1월) 백신 미접종 또는 2차 접종 이후 추가접종 미실시자가 입소 당일 PCR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한 경우 최대 4일간 격리비용 산정
- (변경) (급여제공월 2022년 2월부터) 백신 접종여부 불문, 수급자가 신규 입소 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한 경우 최대 4일간 격리비용 산정

※ 급여비용 산정 세부기준은 코로나 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확인 필수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입력방법(가감산)



■ 신규입소자 최대 4일의 격리 비용 산정 관련

– 내용 :

- 신규 입소 후 PCR검사를 시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한 경우, 최대 4일간 격리비용 산정

– 경로: 입퇴소내용관리 > 입퇴소내용신고 화면 상단의 **미접종자 신규입소**

– 입력 방법: 대상자 여부에 '신규_미접종', '신규_접종' 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실제 격리 일수와 신규 입소일을 입력(YYYYMMDD형태, 즉 8자리 숫자 형식으로 입력)

수급자 PCR 검체채취일자 등록 [npfa201p08] ×

수급자 PCR 검체채취일자 등록

수급자 입퇴소내역을 먼저 등록하신 후, 아래 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조회

순번	성명	생년월일	미접종 신규 입소자			PCR 검체 채취일																									
			대상자 여부	격리일수	신규입소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530302	신규_미접	4	20220101	☑		☑																							
2		210221	해당없음																												
3		321227	신규_미접종																												
4		330616	신규_접종																												
5		370522	기존_미접종																												
6		340205	기존_접종																												
7		380427	▼																												
8		410522	▼																												
9		290505	▼																												
10		230119	▼																												
11		230403	▼																												
12		250318	▼																												
13		251221	▼																												
14		260105	▼																												
15		270211	▼																												
16		280907	▼																												

▶백신 미접종 신규입소자는 입소당일에 PCR 검체 채취를 등록하지 않으면 격리비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입력방법(청구)



■ 신규입소자 최대 4일의 격리 비용 산정 관련

- 가감산에서 입력한 신규 입소일로부터 격리 일수만큼 수급자 격리급여비용 콤보박스 활성화 (기관에서 적용/미적용 선택가능)

시설 및 단기보호(원청구) [npca015m01]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npca202m01]

입퇴소신고내용 관리

급여내용 자료 관리

청구명세서 조회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종료하기

급여제공월 2021-10

처리상태 전체

수급자명 검색어 입력

조회

화면설명

청구대상자

NO	성명	인정관리번호
1		
2		

서비스 내역

NO	일자	입퇴소 신고내용	서비스명칭	가산점수	감산비율(%)	산정외박일수	입소시간	외박시작일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처리상태
			서비스단가	산정단가		입소비용승인여부	퇴소시간	외박종료일	가감산결정순번	
	2021-10-08	입소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입소-12시 7:00~19:00)	0	0		17:00		적·	급여내용작성
			30,760	30,760					17,980	27
	2021-10-09	계속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1일당)	0	0				적·	급여내용작성
			61,520	61,520					35,950	27
	2021-10-10	외박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외박)	0	0	1		2021-10-10	적·	급여내용작성
			30,760	30,760				2021-10-10	17,980	27
	2021-10-11	외박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외박)	0	0	1		2021-10-11		급여내용작성
			30,760	30,760				2021-10-12		27
	2021-10-12	외박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외박)	0	0	1		2021-10-10		급여내용작성
			30,760	30,760				2021-10-12		27
	2021-10-13	복귀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1일당)	0	0					급여내용작성
			61,520	61,520						27
	2021-10-14	계속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1일당)	0	0					급여내용작성
			61,520	61,520						27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1일당)	0	0					급여내용작성

총인원: 2 명

대상자생성: 2명

급여내용저장: 0명

명세서작성중: 0명

명세서생성: 0명

총일수: 19 일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입력방법(청구)



■ 신규입소자 최대 4일의 격리 비용 산정 관련

- 명세서 생성 후 수급자 격리급여비용 내역 확인

시설 및 단기보호(원청구) [npca015m01]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npca204m01]

입퇴소신고내용 관리

급여내용 자료 관리

청구명세서 조회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종료하기

종액	1,117,750 원	몬인부담금	83,660 원	가산후 종액	1,226,880 원
산성종액	1,045,840 원	청구액	1,034,090 원	가산후 청구액	1,143,220 원
가산기준금	836,670 원	입소자수	23	수급자수(가감산)	23
가산구분	인력추가배치	간호사배치	야간식원배치	필요인력배치	맞춤형서비스
점수	1.2C	0.00	1.8C	0.0C	0.00
금액	43,650 원	0 원	65,480 원	0 원	0 원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산점수

C

감산금액

세부내용

0 원

2개월 연속감산

N

장기요양 급여내용

엑셀다운로드

NO	시작일자	종료일자	명칭	일수	단가	소계	감산점수	감산비율	최대금액 적용	산정단가
1	2021-10-08	2021-10-08	A2K10000 (노인요양(현행법)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산정 50% (1일당))	1	17,980	17,980	0	0	N	0
2	2021-10-08	2021-10-08	A2330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입소-12시간미만))	1	30,760	30,760	0	0	N	30,760
3	2021-10-09	2021-10-09	A2310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1일당))	1	61,520	61,520	0	0	N	61,520
4	2021-10-09	2021-10-09	A2K00000 (노인요양(현행법)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산정(1일당))	1	35,950	35,950	0	0	N	0
5	2021-10-10	2021-10-10	A2K10000 (노인요양(현행법)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산정 50% (1일당))	1	17,980	17,980	0	0	N	0
6	2021-10-10	2021-10-12	A2320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외박))	3	30,760	92,280	0	0	N	30,760
7	2021-10-13	2021-10-26	A2310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등급 (1일당))	14	61,520	861,280	0	0	N	61,520

장기요양 급여특정내용

특정내용등록

자료첨부

NO	발생단위	구분코드	구분코드명	일자	특정내용(기타내용)기재
1	일자	S101	입소일시	2021-10-08	202110081700
2	일자	S201	외박일	2021-10-10	20211010/20211012

1. 수급자 격리비용 청구 대상자 입력방법(청구)



■ 신규입소자 최대 4일의 격리 비용 산정 관련 추가 안내사항

- 등급, 급여 종별에 관계없이 2021년 기준 1일당 71,900원으로, 50%는 공단으로 청구.
나머지는 수급자에게 청구해야 함.

※ 공단청구액: 12시간 이상인 경우 35,950원(2021년), 37,430원(2022년)

- 수급자 격리 기간 시작과 종료 당일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비용 산정
 - 12시간 이상인 경우 100%
 - 12시간 미만인 경우 50%
- 격리 중 외박한 경우 외박 첫날에 한해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비용 산정(외박에서 복귀한 경우 격리했더라도, 신규입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격리비용 미산정)
 - 12시간 이상인 경우 100%
 - 12시간 미만인 경우 50%

2. 한시적 방역지원금(신속항원검사) 인정 횟수 확대

h·well
국민건강보험



2. 한시적 방역지원금(신속항원검사)인정 횟수 확대



■ 한시적 방역지원금 인정 횟수 확대관련

– 청구 방법 기존과 동일

– (기존) 종사자는 주1회(월~일요일), 수급자는 월1회까지 검사횟수 당 비용 지급

– (변경) 급여제공월 2022년 2월부터, 종사자 주2회(월~일요일), 수급자는 월4회*까지 검사횟수 당 비용지급

*(수급자) 발열 등 유증상 또는 감염원 접촉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산정이 가능하며, 검사관리대장 기타 란에 사유 기재 필수

3.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PCR 검사 시) 청구 방법 안내

h·well
국민건강보험



3. 수급자 검체채취 지원금 청구(가감산)



-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수급자 1인당 주1회 검체 채취 시 지원금 지급 관련
 - 입력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자이면서,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대상자이나 미실시자**
 - 내용
 - **최대 월4회(주1회)** 시설 내 의료/간호 인력이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 접종 미실시한 수급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경로: 입퇴소내용관리 > 입퇴소내용신고 화면 상단의 **미접종자 신규입소**
 - 입력 방법: 대상자의 백신여부를 입력하고, PCR 검체 채취일을 체크

급여비용가산및감액산정 [npfa100m01]

사용자 메뉴 ? 급여제공년월 : 2021년 12월 급여유형 : 노인요양시설(예정법), 가형1실 [월기준근무시간 : 184시간] [자료상태 : 입력가능] 닫기

입퇴소내용관리 > 입퇴소내용신고 > 입퇴소내용신고 이력서내용조회 제출이력조회

수급자 PCR 검체채취일 등록 [npfa201p08]

수급자 PCR 검체채취일 등록 수급자 입퇴소내역을 먼저 등록하신 후, 아래 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조회

순번	성명	생년월일	미접종 신규 입소자			PCR 검체 채취일																											
			대상자 여부	격리일수	신규입소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330502	신규_미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30727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31203	기존_미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50113	신규_미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51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60725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61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90916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90419	기존_미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60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360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71126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40924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450409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01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60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신 미접종 신규입소자는 입소당일에 PCR 검체 채취를 등록하지 않으면 격리비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수급자 검체채취 지원금 청구(가감산)



■ 수급자 검체 채취(PCR검사) 일자 등록

– 입력 방법

- 수급자에게 PCR검사 검체 채취한 일자를 체크하여 등록
- 주2회 이상 입력시 입퇴소내용 제출불가
- 대상자 여부의 '신규_미접종', '신규_접종'은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청구 뿐만 아니라, 수급자 격리비용 산정 시에도 연동됨
- 수급자 검체채취(PCR검사)만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접종 신규 입소자의 '격리일수' 및 '신규입소일' 입력 불필요

입력화면

제출화면

3. 수급자 검체채취 지원금 청구(청구)



■ 수급자 검체 채취(PCR검사) 청구

- 가감산에서 '신규_미접종', '기존_미접종'으로 입력된 수급자의 PCR 검체 채취 횟수로 계산하며, 가감산에서 해당 자료 제출 및 결정요청 필요
- 해당 지원금은 **급여제공월 2021년 12월부터 산정되며, 청구 기간은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ex. 급여제공월 2021.12월의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도 2022년 3월까지 청구 가능)
- 경로 : 급여비용청구>코로나19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금 청구>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요양자원 급여계약 가산및감액산정 급여비용청구 지급관리 기관평가 급여제공통합관리 급여제공서식 기타

청구심사계시판
급여비용청구
재심사조정청구
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조회 및 출력
청구상담봉사
청구그림기관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인센티브 청구
장기근속장려금
청구교육신청
방문요양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청구
코로나-19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금 청구

신속활원검사 지원금
종사자 검체 채취 지원금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① 기존 '검체채취 지원금' 을 '종사자 검체 채취 지원금' 으로 명칭 변경하여 구분함
② 신설된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청구

3. 수급자 검체채취 지원금 청구(청구)



■ 수급자 검체 채취(PCR검사) 청구

- ① 가감산에서 제출 및 결정요청한 수급자 검체 채취 횟수 확인
- ② 횟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명세서 자동생성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청구 [npcf931m01]

청구명세서 조회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종료하기

급여제공월 2022-01
조회

② 명세서 자동생성

■ 청구대상자 (시설장)

NO	성명	원료여부	처리상태
1	남		

청구구분
성명
식중
명칭(수가코드)
일련번호
생년월일
정구액

■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PCR 검사시)

난가	2,500	횟수 ①	12	정구액	30,000
비고(정구불가사유)					

※ 작성서류: 검사관리(의뢰)대장, 보건소에 검체 채취 의뢰한 내용 등 증빙서류(수령증), 수급자 예방접종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5년간 보관
※ 실제 검사한 횟수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내용
명세서기타특정내용 등록
소명자료파일첨부

관리	발생단위	구분코드	구분코드명	일자	특정내용(기타내용)기재

3. 수급자 검체채취 지원금 청구(청구)



■ 수급자 검체 채취(PCR검사) 청구

- 명세서 등록완료 후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로 이동하여 기관 정보, 청구액을 확인하고
 - ① 작성인을 입력하여
 - ② 청구서 생성하고 청구서 전송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청구 [np cf931m01]

청구명세서 조회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종료하기

급여제공월 2022-01 처리상태 전체 조회

순번	접수번호	청구구분	처리상태
1		추가청구	명세서작성중

명세서전체출력 청구서출력 **청구서생성**

상기요약기관번호

기관명

주소

e-mail

전화번호

청구일자

정구인

작성인

건수 1건 청구액 0원



감사합니다

